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4. 2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4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4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-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 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본 조례안은
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명시하고, 자문 지원,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의 약 2,600명의 종사자와 38만명의 구민을 중대재해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는 상위법인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(정의)를 따르도록 하여 입법경제성을 확보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▲정책 수립·추진 ▲행정적·재정적 지원 ▲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4조(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)는 법 제4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함.
- 안 제5조(실태조사)는 안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영등포구 실태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6조(안전·보건 예산 확보)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
 - 우선, 예산 편성에 관해 “노력”(임의규정)하도록 규정하여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며,
 - 또한,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 제9조제1항제1호 법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호를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7조(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)는 영등포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·수단을 중점

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현재, 영등포구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(47개소)만 있고, 제2호(공중교통수단) 및 제3호(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)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- 안 제8조(자문 지원)는 안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·수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함.
- 안 제9조(교육 및 홍보)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구민,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0조(사무의 위탁)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▲실태조사 ▲자문지원 ▲교육·홍보에 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□ 검토 결과

○ 제정 배경
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,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및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등 산업재해를 비롯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·16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, 이와 같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1. 1. 26. 제정 및 2022. 1. 27. 시행되었으며,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4. 1. 27. “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”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.
-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“경영책임자등”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도 포함되어 있으며, 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에게도 구민과 종사자를 각각 중대 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”가 부여됨에 따라
- 본 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영등포구 현황

- 영등포구는 법 시행일(2021. 1. 27.)에 맞추어 2021년부터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2024년 법이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, 작업환경 위험요소 개선에 대한 자문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, 법이 시행된 후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.

○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“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”을 지정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재해 발생 확률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
- 또한, 자문지원 및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법에 따른 의무 수행자인 “경영책임자등”으로서 수동적인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, 공공(公共)으로서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의 역할도 부여함으로써 공공·민간 전반에 걸쳐 안전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상기 주요내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으며, 조례 제정의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4.

발 의 자: 이규선·차인영·이순우
전승관·박현우·김지연
우경란·남완현·정선희
의원 (9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예방 및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 6조)
- 바.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 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(이하 “중대재해”라 한다)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, 대응을 위한 조직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

3.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·보건 예산 확보)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·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
2.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
3.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
4.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·보건 예산

제7조(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)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
2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
3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

4.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

제8조(자문 지원)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·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과 종사자,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·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8조에 따른 자문 지원
3.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